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만 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368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재검토 기간, 해제·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찰물질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시의 고려 사항 및 안내 방법, 재검토 기간 규정(안 제27조제1·2·4항)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시에도 지정할 때와 같은 고려사항과 안내 방법(공고·안내판)을 적용하고, 재검토 기간은 5년으로 규정

나. 법 제9조의5에 따른 관찰물질 관련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안 제8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다.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문구 명확화(안 별표7)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기준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을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량”으로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화
라. 배출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10 비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하도록 추가 규정하여 해석의 일관성 확보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하려”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지정한”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7.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재검토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검토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1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9조의5에 따른 관찰물질의 지정, 고시, 조사 및 결과의 공개

별표 7 제4호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으로 한다.

별표 10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지역별 부과계수는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한다.

별표 18 제2호사목 위반행위란 사목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u>시장·군수·구청장</u>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을 <u>지정하</u>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 ----- <u>지정·변경 또는 해제하</u> 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u>시장·군수·구청장</u> 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을 <u>지정</u>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낙시금지구역이나 낙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은 법 제2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u>지정·변경 또는 해제한</u>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u>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u>
2. <u>법 제20조제2항</u> 에 따른 낙시의 방법·시기 등 제한사항	3. <u>법 제20조제6항</u> ----- --

(낙시제한구역에만 공고한다)

3. (생략)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5. (생략)

<신설>

6. (생략)

③ (생략)

<신설>

제81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신설>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법 제20조제7항-----
--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의 재검토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검토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1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9조의5에 따른 관찰

4. ~ 7. (생략)	<u>물질의 지정, 고시, 조사 및 결과의 공개</u> 4. ~ 7.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998